

#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12월 1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강 덕 면)

### □ 제안이유

-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75호, 2006. 6. 29. 공포, 2006. 8.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감비율과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감축 하한률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한선을 각각 폐지하고, 국가 및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경감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안 제6조제4항 삭제)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는 규모는 ?	○ 순천향병원, 투나, GS백화점, 지지아나등 해당되면 기관, 사업체에서 부세운영, 주차장 유료운영, 승용차함께 타기 추진, 시차추진, 통근버스 운행등 감축 항목을 이행할 경우 경감 산출 될것임.
○ 우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규모는 ?	○ 2006년도에는 6,332건 26억여원 부과하여 납부기한내 5,138건에 22억여원을 징수하였음.
○ 부과,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목적은 ?	○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이며 회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고 있음.
○ 부담금 부과 기준은 ?	○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0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출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75호, 2006. 6. 29. 공포, 2006. 8.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감비율과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감축 하한률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한선을 각각 폐지하고, 국가 및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경감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안 제6조제4항 삭제)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을 “교통량을”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를 “부담금을”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p> <p>①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u>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u>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u>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u> 경감할 수 있다.</p> <p>②·③(생략)</p> <p>④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u>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u> 단, <u>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u></p> <p>⑤(생략)</p> <p>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u>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6.(생략)</p>	<p>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p> <p>①----- -----<u>교통량을</u>----- ----- -----<u>부담</u> <u>금을</u>----- -----</p> <p>②·③(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⑤(현행과 같음)</p> <p>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6.(현행과 같음)</p>